

심 사 보 고 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재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난 91. 4. 11 조례 제1269호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되었으며, 최근 개정은 97. 4. 1 조례 1513호로 개정된바 있음.
- 0 동 조례안 제6조(여비지급의 기준)및 제7조(준용)에 의하면 동 조례 의원의 여비지급 및 지급기준은 고성군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준에 의한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차하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0 1999. 7. 2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